국회본회의회의록 제415회국회 (임시회)

제 1호

국회사무처

2024년6월5일(수) 오후 2시

의사일정

- 1. 국회의장 선거
- 2. 국회부의장 선거

상정된 안건

О	의사진행발언	• 2
1.	국회의장 선거	. 5
О	국회의장(우원식) 당선인사	• 6
2.	국회부의장 선거	10
О	국회부의장(이학영) 당선인사	11

(보고)

(14시01분)

○**사무총장 백재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사무총장 백재현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신 의원님들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제415회 국회(임시회) 집회 및 국회의장 선거를 위한 의장직무대행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0일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당선된 300 명의 국회의원 모두가 국회에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31일 박찬대 의원 외 170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국회법 제5조 및 제14조에 따라 국회사무총장 명의로 제415회 국회(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였고 헌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국회법 제18조제1호에 따라 추미애 의원님의 사회로 의장 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시03분 개의)

○의장직무대행 추미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국회사무총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국회법 제18조제1호에 따라 제22대 국회 전반 기 국회의장 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된 하남시갑 출신 추미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우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 제22대 국회의 첫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민생·평화·민주주의, 3대 위기를 한꺼번에 겪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생·고령화·기후위기 등 여러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국민들이 바라는지 더 늦기 전에 대안과 해법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선출되는 의장단과 동료 의원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 제22대 국회를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는 개혁 국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 의사진행발언

(14시05분)

○의장직무대행 추미애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22대 총선 이후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장에 함께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당 선과 임기 개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늘이 공식 개원일이 되어 의장단을 선출하고 원 구성을 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되지 못해 여당 원내대표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본회의가 열렸다고 하지만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본회의는 성립할 수도 없고 적법하지도 않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이유는 오늘 회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항의하기 위함이 지 본회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회의를 열 권한은 의장에게 있습니다. 의장이 교섭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 의사일정을 작성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의장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회의장 공백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무총장이 의장대리로 임시국회 소집 공고를 하고 임시의장이 선출되어 집회가 열리고 있지만 임시의장은 사회만 볼 수 있지 여야 합의도 없는 상황에서는 본회의 소집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첫 국회 집회일인 오늘 이 자리가 의사일정 합의 없이 일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의 힘자랑으로, 막무가내로 국회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 준 45.1%의 민심을 존중하지 않고 짓밟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에는 6월 5일 첫 본회의를 열고 의장단을 선출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 조항은 여야가 협의해서 의사일정에 합의를 하여 회의를 개최하라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역대로 지금까지 여야가 치열한 협의 과정을 거쳐서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했던 것입니다. 민주당은 법대로 하자고 외치지만 사실은 다수의 힘으로 오늘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산안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은 국회법보다 상위인 헌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매번 여야 간 합의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을 넘겨 처리해 왔습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2022년에는 민주당과의 협의 지연으로 법정기한을 22일 넘긴 12월 23일, 2023년에는 19일을 넘긴 12월 21일에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헌법 규정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여야 합의로 예산안 처리를 위해 협상하고 타협, 합의하는 과 정을 거쳤으며 바로 이것이 의회 민주주의입니다.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마십시오.

지난 18대 국회를 기억해 보십시오. 당시 한나라당은 153석, 민주당이 81석이었습니다. 지금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의석 차이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라는 대의 앞에 본회의를 열지도, 의장단을 선출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6월 5일 임시국회가 소집되었지만 '개의 되지 않았음', '의사일정 미합의로 인해 의장·부의장 선거를 하지 못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대 야당은 총선의 민의를 따라야 한다며 일방 독주를 강행하지만 그것은 총선 민의 를 오독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총선 민심은 협치의 복원입니다. 야권을 200석에 미치지 못하게 한 민심의 뜻은 협치하고 대화를 통해 국민을 위해 함께 일하라는 것입니다. 이 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국회는 언제나 다수당과 소수당, 1당·2당이 존재해 왔습니다. 하지만 소수당에 대한 존중 없이 다수결의 원리는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국회의 관례이고 역사인 것입니다. 헌정사를 돌아보면 영원한 여당도 다수당도 없었습니다. 여야가 바뀌고 다수당 과 소수당이 바뀌는 일이 숱하게 일어났습니다.

선배 의원님들께서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대를 설득하는 합의의 정신을 중요한 가치로 여겨 왔습니다. 과거 동물국회라 불리던 시절에도 깨지지 않았던 전통입니다. 여 야가 힘을 합쳐 국회를 운영하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도 이러한 명령에 부응해야 합니다. 여야 경쟁 속에서도 협치의 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원 구성부터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면 여야 협치는 존립 근거를 잃게 됩니다. 국 민의힘은 얼마든지 협력하고 힘을 합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민생 현안이 쌓여 있습니다. 힘을 합쳐도 시간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모자랍니다. 민주당은 1당다운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적인 행동으로 국회를 운영해 나갑시다.

22대 국회가 여야 협치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며 출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 개최와 국회의장단 선출을 국민의힘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총선 민심은 협치의 복원입니다. 이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의장직무대행 추미애 추경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성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준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박성준입니다.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께서 오늘 국회 표결에 참석할 수 없다는 여러 논리를 펴더군요. 일단 논리를 죽 들어 보니까 전혀 타당하지 않다는 얘기를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협상은, 6월 5일 날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의장·부의장을 선출하는 법적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원내대표단 처음에 만나서 5월 13일부터 죽 회담을 이어 왔지요. 한 열 차례 이상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6월 5일 날 국회법을 준수해서 의장 선출하자', 그동안에 계속 얘기해 왔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결국 협의의 과정이라는 것이지요. 절차적 과정을 준수하고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얘기해야 되는데 그 협의 과정은 없다는 뜻입니까, 그러면?

그리고 또 하나, 한 예를 들지요. 국회의장·부의장 선출을 하려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아닙니까? 준비를,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의장은 누가 되고 부의장은 누가 되는지 예측 가능한 인물을 선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의장·부의장을 선출했고 이미 6월 5일 날 선출하겠다라는 예고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국회부의장 선출했습니까? 전혀 맞지 않는 얘기지요. 누구를 선출했습니까, 지금? 그런 논리를 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 국힘당에서 주장하는 여러 논리들을 보면 결국은 국회의 합의 과정이라고 하는 부분과 협의 과정들에 대한 어떤 설명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국회의 신뢰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절차성을 지키고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지금 과거의 사례를 보면 사실은 국회법 준수하지 않은 상태에서원 구성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그런 질타를 하지 않았어요? '야, 제대로 좀 국회 구성을 해서 민의를 받들고 가장 어려운 민생 회복에 앞장서'라고 하는 얘기들을 누누이 해왔기 때문에 이번 22대 국회는 좀 바꾸자, 그런 변화의 물결에 맞게 새롭게 원 구성도하고 국회법 절차를 지키자라는 얘기를 누누이 해왔던 겁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은 것이 국민의힘인 거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지요. 이번 총선의 민의가 뭐였습니까? 윤석열 정권, 검찰 정권이 과도하게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도한 정권이었고 독선과 독주, 독선·독단을 행사해 왔던 윤석열 정권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심판했던 것 아닙니까? 이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라고 하는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그러면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6월 5일 날 국회의장단 선출하고 6월 7일 날 원 구성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해 왔던 민생 회복이라든가 국정 전환 기조라든가 지금 검찰 정권에 대한 어떤 견제의 기능으로서 국회가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국민들의 명령 아니겠습니까? 그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 건데 그 명령을 수행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의 사령탑이, 사령관이여기 나와서 말을 한다라는 것이 과연 옳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요.

원 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 구성을 위해서는, 무엇을 하자는 겁 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조속하게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인 데, 국민의힘이 원 구성을 늦춘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지요. 대통 령실 눈치 보고 그동안에 국민의힘이 거수기 역할 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성토를 해야 되는 것이고.

원 구성에 있어서 기준이라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분 명히 그 기준들이 있는데 그 기준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 이기 때문에 우리는 과감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논란들이 있고 어떤 과정상에서 분명히 불협화음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정치적인 역할인 것이지요. 그것이 국회의 어떤 소임이고 민주주의의 어떤 절차적 과정인데, 민주주의에서 가장 큰 역할 중 하나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대표를 만들고 그 대표가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리는 것인데 저는 이번 총선 민심에서는 엄격하게, 국민들이 준엄하게 경고를 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은 모습을 바꿔라, 검찰 통치 바꾸고 새로운 어떤 전환점에서 민생 정치를 하 도록 노력하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명령인데 그것을 거부한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잘 알 듯이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했을 때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을 통해서 정책을 수행하고 국민 들에게 민생 지원하라는 것인데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해 서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하는 데 있어서 지금 22대 원 구성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연하겠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국회를 무력화하겠다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저희는 받 아들일 수 없다. 국회법 준수대로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행 추미애** 박성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국회의장 선거

(14시16분)

○**의장직무대행 추미애**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회의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국회의장 선거는 헌법 제48조 및 국회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동아 의원, 김용만 의원, 모경종 의원, 백승아 의원, 김재원 의원, 이해민 의원, 정혜 경 의원, 천하람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국장 정명호**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은 후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 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의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하거나 의원 성명이외의 다른 표시를 한 경우는 무효로 처리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4시18분 투표개시)

○의장직무대행 추미애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14시32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함에서 투표용지 1매가 나왔습니다. 해당 투표용지는 감표위원의 확인을 거쳐 투 표함에 넣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명패수는 19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가 191매로서 명패수보다 1매가 적습니다. 관례에 따라 명패수보다 적은 1매의 투표수는 기권으로 인정하고 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 결과는 그동안 관례에 따라 당선된 의원의 득표수만 발표하고 다른 의원들의 득표수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장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92표 중 189표를 얻은 우원식 의원이 국회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회의 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수)

(투표 결과는 정정(189표→190표)하여 끝에 실음)

o 국회의장(우원식) 당선인사

(14시47분)

○의장직무대행 추미에 그러면 새로 선출되신 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의장님,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당선인사와 더불어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추미애 의장직무대행,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의장 우원식**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제22대 국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우원식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장으로서 첫인사를 드리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국민 여러분께는 송구합니다.

국회의장단 선출은 국회에 부여된 헌법적 의무입니다. 상임위 배분과는 직접 관련이 없고 무엇보다 국회를 원만하게 빨리 구성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높은데도 여당 소속 의 원들께서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오늘 이 22대 국회 첫 본회의 가 국민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지 함께 성찰하고 숙고해야 하겠습니다.

22대 국회는 중첩되고 연결된 위기 속에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민생과 개혁의 위기, 신뢰의 위기, 입법권의 위기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삶이 위기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 고 2년이 지났는데 국민의 삶은 조금도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나빠졌다는 평 가가 압도적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바로 이 민생 과 개혁의 위기 한복판에서 22대 국회는 임기를 시작합니다.

국민은 국회가 고단한 삶에 기댈 언덕이 되어 주기를 원합니다. 국민의 생업을 안정시 키는 것이 정치의 근본이고 그래서 정치는 힘이 약한 사람들의 가장 강한 무기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는 국회의 신뢰도는 국민이 느끼는 절망감이 얼 마나 커지고 있는지 말해 줍니다. 국회가, 정치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체념과 절망 이것이 22대 국회가 넘어야 할 신뢰의 위기입니다. 핵심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의 법안 폐기율은 64%에 육박합니다. 역대 어느 때보다 많은 법안이 접수됐지만 입법에 반영된 것은 35%에 그쳤습니다. 대부분, 3분의 2 가까이는 심사 절차 를 다 마치지도 못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14건이 있었습니다. 민주화 이후 역대 정권을 통틀어 가 장 많습니다. 앞선 35년 동안 행사된 재의요구권은 16건이었습니다.

입법은 국회의 권한이자 책임입니다. 22대 국회에서도 입법권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면 신뢰의 위기는 더욱 깊어지고 민생과 개혁의 위기는 임계점을 넘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국회는 국민의 뜻을 실현하고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이견이 있 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방법입니다. 의견이 다를 때, 대립이 격화될 때 어떻게 그 갈등 을 관리하며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위기를 유능하 고 슬기롭게 헤쳐 나가자는 제안입니다. 저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첫째, 의견이 달라도 합의된 기준은 따릅시다.

주장과 의견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의견의 수도, 의견을 표출하는 방법도 다양 해졌습니다. 이제 민주주의는 의견의 다양성을 넘어서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의 문제입니다.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그 기준이 있습니다. 크게 는 헌법이고 구체적으로는 국회법입니다.

헌법은 국회의 의사결정에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하나는 국민주권, 즉 입법·행정·사법 을 통틀어 국가의 모든 결정은 국민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는 국회의 권한은 여야 관계가 아니라 행정부와의 관계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입법 권, 예산 심의·확정권, 조약의 체결·비준 동의권 등 헌법이 명시한 모든 국회의 권한은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삼권분립의 수단입니다.

헌법이 이렇게 국회의 의사결정 방향을 가리킨다면 국회법은 구체적인 절차와 규칙을 규정합니다. 헌법과 국회법은 확립된 사회적 합의이고 법적 규율입니다. 과정에서 갈등하고 대립하고 싸우더라도 기왕의 사회적·법적 합의에서는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새로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이미 정해진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22대 국회가 이전과는 달라져야 할 첫 번째 모습입니다.

국회의장도 노력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토론할 권리와 승복할 의무라고 합니다. 저는 국회의장으로서 의원 여러분의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지원할 것입니다. 소수의견이라도 소외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동시에 결정할 때 결정하고 이견이 있더라도 정해진 기준과 결론에는 승복하는 자세를 요청하겠습니다. 국회 의사결정은 물론 행정부와의 관계에서 도 이 원칙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지키겠습니다.

둘째, 의정활동의 현장성을 높입시다.

국회는 국민의 뜻을 실현하는 장이고 국정에 민의를 반영하는 통로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잘 들으려면 현장에 밀착해야 합니다. 동네 골목과 시장, 우리 사회의 을들의 터전에서부터 세계와 경쟁하는 첨단기술 현장까지 민심은 국민의 삶의 현장에 있습니다.

현장은 그때그때 달라지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정부가 듣는 민심과 국회가 듣는 민심이, 그것이 다를 수 없습니다. 무엇이 국민의 뜻인가를 놓고 다툴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한 분 한 분이 더 적극적으로 민심 속으로 들어갑시다.

갈등의 해법도 국회가 할 일도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 300명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모두 정기적이고 상시적인 민심 청취 수단을 갖고 있다면 우리 국회도 크게 달라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국정에 민심을 전하는 파이프라인이 튼튼해지면 국정 운영도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셋째, 국회를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으로 만듭시다.

삶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사회가 분화하면서 문제 해법을 둘러싼 진단과 갈등의 양상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노동, 복지, 주거, 교육, 의료와 같은 일상 의제부터 기후위기, 저출 생, 지역소멸과 같은 국가적 난제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대부분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가 얽혀 있습니다. 각자 진단하고 각자가 해법을 주 장해서는 그것이 제자리걸음에 머물 가능성이 큽니다.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수적이고 절실합니다. 특정 부문, 영역의 노력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일수록 사회적 대화를 지속시키고 신뢰를 구축해내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국회가 할 때입니다. 국회가 나서서 사회 각 부문이 참여하는 대화의 장을 만들 고 정례화, 제도화해 나갑시다.

국회의원 개개인은 의정활동에서 현장성을 높이고 기관으로서의 국회는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 역할을 한다면 22대 국회는 좀 더 구체적인 희망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를 대표해 대통령과 행정부에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존중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존중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국회가 의결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하거나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를 제약하는 등의 사유 가 아니라면 재의요구권 행사는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해치는 재의요 구권 행사는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헌법을 이탈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우회하는 시행령도 안 됩니다.

특별히 여야 원내 지도부에 요청합니다.

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지켜 원 구성을 마쳐야 합니다. 남은 기간 밤샘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회법이 정한 기한, 6월 7일 그 자정까지 상임위 선임안을 제출해 주십시오. 필요하다면 국회의장도 함께 밤샘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박수)

의원님들, 특히 지역구를 둔 의원들께서 매일매일 느끼실 겁니다. 동네마다 문 닫는 상점, 텅 빈 가게가 어느 때보다 많습니다. 정말 가슴이 찢어집니다. 아찔한 물가에 장바구니는 또 얼마나 가벼워졌습니까. 점심값과 교통비라도 아끼려는 직장인들의 분투 또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민생 대란, 국회가 할 일이 태산입니다.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 한반도 상황도 시급합니다.

개원을 늦출 수도, 늦춰서도 안 됩니다. 원 구성은 그야말로 국회가 일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준비를 이유로 정작 일할 시간을 까먹는다면 그 준비는 누구를 위한 것이고 무엇을 위해 하는 것입니까? 국민의 물음에 답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교섭단체 대표와 회담하겠습니다. 개원은 국회의 의무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국민에 대한 의무와 도리는 다한다는 결기가 필요합니다. 국민의 관점에서 용기와 결단을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합니다. 누구의 편도 아닌 국민의 편입니다. 국민의 삶의 현장에서 국민과 손잡는 국회, 제가 바라고 꿈꿔 온 국회의 모습입니다.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고 국민의 권리를 향상하는 일, 현장에서 배우고 현장에서 해법을 찾는 일, 제 개인적으로는 학생 시절부터 평생을 추구해 온 삶의 방향이자 가치이기도 합니다. 제가 살아온 시간이 무거운 책임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 삶 가까이 있는 국회, 국민이 기댈 수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저는 매일, 매순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좌도 우도 아닌 국민 속으로 가야 합니다. 국회 담장을 뛰어넘어 국민 속으로 가야 합 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국민 속에서 국민과 손잡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그러면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정명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30일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및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부터 각각 교섭단체를 구성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서미화 의원 대표발의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 박충권 의원 대표발의로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117건의 법률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2. 국회부의장 선거

(15시01분)

○**의장 우원식** 의사일정 제2항 국회부의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국회부의장 선거는 헌법 제48조 및 국회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부의장 2인을 각각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은 부득이 두 분 중 한 분만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들께서는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2분 투표개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15시15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18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188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 결과는 그동안 관례에 따라 당선된 의원의 득표수만 발표하고 다른 의원의 득표수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부의장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88매 중 187표를 얻은 이학영 의원이 국회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회부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수)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o 국회부의장(이학영) 당선인사

(15시27분)

○**의장 우원식** 그러면 부의장으로 선출되신 이학영 의원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 다.

이학영 부의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이학영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모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여러분의 지지와 신뢰로 부족한 제가 국회부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커다 란 영광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무거운 책임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가 단순한 명예직이 아니라 국민의 기대와 요구를 실현하는 책임과 사명이 주어진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입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이를 회복하는 것이 저를 비롯한 우리 국회에 주어진 과 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입니다. 낮은 경제성장률과 사회 갈등으로 선진국의 문턱에서 주 춤거리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소상공인의 삶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고 청년들 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접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들을 해 결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에 반영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국회부의장으로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이 고통받는 현장으로 찾아 가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견해와 이해를 조정하고 통합하는 호민관과 같은 역할 을 수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들을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협력하여 입법과 예산 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께 우리 국회가 제대로 일하고 있다 는 믿음을 심어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끼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을 걱정하지 않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 그것이 국회의 존재 이유이자 저 이학영의 삶이며 정치를 하는 이유이기 때 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저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의장 우원식** 이학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국회의장 선거에서 투표용지가 1매 부족해서 기권으로 처리했습니다만 해당

투표용지가 투표함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감표위원들의 확인을 거쳐서 해당 투표용지를 당선 득표수로 추가하겠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장 선거 총 투표수 192표 중 당선 득표수를 190표로 정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의장 및 부의장 투표 결과

의장	우원식 190 김현정 1 박해철 1
(투표 결과 선포 후 투	표함에서 투표용지 1매 발견, 기권에서 우원식 의원으로 정정)
부의장	이학영 187 무효 1

○출석 의원(196인)

강경숙 강득구 강선우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홍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기 김병주 김선민 김기표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윤덕 김재원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정재 김태년 김태선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김한규 노종면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수혂 박주민 박지혜 박성준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지워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송옥주 송재봉 송기헌 안규백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용혜인 윤종오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허 이주영 이준석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종덕 정을호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계원 조 국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채현일 천준호 조정식 차규근 차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추경호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창민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희

○개의 시 재석 의원(191인)

강득구 강선우 강경숙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기 김병주 김선민 김용민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윤덕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상혁 박선원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박민규 박범계 박성준 박수현 박은정 박 정 박주민 박지원 박찬대 박용갑 박정현 박지혜 박해철 박홍근 백승아 박홍배 박희승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락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이개호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인영 이소영 이언주 이재강 이재관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영 이준석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전재수 전진숙 장철민 전용기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춘생 정태호 정청래 정혜경 조계원 조 국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경호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차지호 천하람 한정애 한준호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산회 시 재석 의원(140인)

권칠승 강경숙 강득구 강선우 강유정 강준현 곽상언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민석 김병기 김성회 김승원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 윤 김재원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선원 박수현 박은정 박성준 박용갑 박 정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송재봉 양부남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양문석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기헌 이병진 이성윤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영 이춘석 임호선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광현 장경태 장종태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을호 정준호 정진욱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 국 조인철 주철현 차규근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준호 허 영 한정애 한창민 허성무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청가 의원(2인)

윤상현 조정훈

○국회 참석자

사무총장 백재현 의사국장 정명호

【보고사항】

○교섭단체 구성

더불어민주당 (2024. 5. 30.) 국민의힘 (2024. 5. 30.)

○교섭단체 소속의원 명부 제출

교섭단체				 소속	- 의원				 연월일
	강득구	강선우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기	김병주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윤덕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市	구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런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위성락	2024. 5. 30.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춘석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느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	병선 황	·정아	황희			
				(이상	171명)				
	강선영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태호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국민의힘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2024. 5. 30.
7 17 1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2024, 0, 30,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인요한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교섭단체	소속의원	연월일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호영 진종오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 한지아	
	(이상 108명)	

○교섭단체 소속의원 제적

의원명	교섭단체	사유	연월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탈당	2024. 6. 5.

○의안 제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

(2024. 5. 30. 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0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5. 30. 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0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4. 5. 30. 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03)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5. 30. 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04)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장관 재직시 비위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4. 5. 30. 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05)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4. 5. 30. 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06)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5. 30. 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0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5. 30. 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08)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24. 5. 30. 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0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5. 30.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0)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5. 30.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5. 30.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2)

주한미군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4. 5. 30.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3)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5. 30. 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5. 30. 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5. 30.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6)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5. 30.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5. 30.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5. 30.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5. 30. 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0)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5. 30. 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1)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5. 30. 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5. 30. 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3)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5. 30. 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4)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5. 30. 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5)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5. 30. 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5. 30. 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5. 30. 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5. 30. 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9)

댐건설 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5. 30.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3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5. 30.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3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5. 30.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32)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5. 30. 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33)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024. 5. 30.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5. 30. 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35)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5. 30. 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36)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2024. 5. 30. 이재명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0037)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4. 5. 30. 박찬대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0038)

마을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4. 5. 30. 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39)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5. 30. 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0)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5. 30. 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5. 30. 문금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004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5. 30. 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3)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2024. 5. 30. 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5. 30. 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5)

제주4 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5. 30. 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6)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5. 30.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7)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5. 31. 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8)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4. 5. 31. 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9)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2024. 5. 31. 이헌승 의원·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50)

2023회계연도 결산

(2024. 5. 3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0051)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4. 5. 3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0052)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2024. 5. 31. 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53)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5. 31. 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54)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24. 5. 31. 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5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5. 31. 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56)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5. 31. 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5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5. 31. 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5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5. 31.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5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5. 31. 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5. 31.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5. 31.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5. 31.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5. 31.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4)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안

(2024. 5. 31. 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5)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5. 31. 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5. 31. 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5. 31. 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8)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2024. 5. 31.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5. 31.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70)

2023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2024, 5, 31, 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0071)

2023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2024. 5. 31. 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007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3.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7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3.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74)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3. 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75)

일본의 라인 침탈 야욕 규탄 및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결의안

(2024. 6. 3. 이해민 의원 등 12인 발의)(의안번호 2200076)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3.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77)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 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4. 6. 3. 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7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3. 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3.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0)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3. 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3. 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2)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3. 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3.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4)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3.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3. 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6)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3.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3.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3.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9)

농업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3.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9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3. 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91)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의혹

(2024. 6. 3. 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9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3.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93)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2024. 6. 3. 맹성규 의원·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94)

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

(2024. 6. 3. 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9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3. 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96)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2024. 6. 3. 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9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3.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9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3.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9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3.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00)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3.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01)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3.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02)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3.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0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4.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0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4.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05)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4. 6. 4. 김성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06)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4. 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07)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4. 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08)

대한민국 정부의 자국 기업 보호 촉구 및 일본의 라인 강탈 야욕 규탄을 위한 결의안

(2024. 6. 4. 황정아 의원 등 57인 발의)(의안번호 2200109)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4. 6. 4. 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4. 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1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4. 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4. 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13)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4. 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14)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4. 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15)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4.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16)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4.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1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4.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18)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4. 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1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4. 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4.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4. 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4. 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4. 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4. 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4. 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6)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4. 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7)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4. 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4. 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4. 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0)

이상 130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청원 제출

21대22대 총선및 대선, 지방선거 등 과거 선거 부정선거 전수조사에 관한 청원

(2024. 5. 30. 황성로 외 50,567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01)

무분별한 해외 직구 규제 반대와 KC인증 국영화에 관한 청원

(2024. 5. 31. 심현수 외 50,211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02) 이상 2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보고서 제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보고

(2024. 5. 30. 감사원장 제출)

2024년 기금존치평가보고서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보고서

(이상 2건 2024. 5. 31.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제415회국회(임시회) 집회 요구

일시	2024년 6월 5일 오후 2시
집회근거	헌법 제47조제1항
이유	국회법에 따른 22대 국회 개원을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외 170인
공고자	국회사무총장 백재현

(2024. 5. 31.)

○임시의석 배정표

